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20가단50116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C

3. D공사

변론 종결2020. 6. 23.

판결 선고2020. 7. 14.

주 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36,07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3.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5. 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D공사는 피고 B,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6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망 E와 피고 D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D공사가 망 E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명재권

별지